

##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2007년 11월 27일 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연구 활동에 있어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

### 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개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2명, 직무이사 전원,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협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히 그리고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판정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및 관련된 진술 내용·정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재심의 기구는 학회장이 편집위원과 학회 임원중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은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본 세칙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 제11조(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